

# 서울신학대학교 장학금 지급지침

##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지침은 본 대학교 학칙에 규정된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학칙 제42조에 의거, 장학생을 선발하고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8.12.>

**제2조 (업무규정)** 장학 업무는 본 대학교 직제 및 직무 규정 제44조에 규정된 장학위원회가 심의하여 총장의 결재를 얻어 시행한다.

## 제 2 장 장학생의 선발

**제3조 (자격)** 본 대학교의 장학생으로 선발될 수 있는 학생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장학생을 선발하는 학기에 등록하고자 하는 학생
2. 청강 또는 연구생이 아닌 정규 학생
3. 재학 중 징계 당한 사실이 없는 학생
4. 품행 및 신앙생활에 결격이 없는 자로 ① 성적장학금은 직전 학기 이수학점 15학점 이상, 평균평점 B+(3.5) 이상, F 성적이 없는 자 (단, 성적이의신청기간 이후에 정정된 성적 및 계절학기 성적은 적용하지 않는다.) ② 그 외 장학금은 12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평균 성적이 2.20이상인 학생, F성적이 없는 자, ③ 보훈장학금은 보훈청규정에 따르며, 기준 성적이 <별표>에 따로 정해진 경우 그 기준에 따른다.<시행일: 2013. 4. 17.>
5. 대학원 장학금은 대학원위원회 결의에 따른다. ① 성적장학금 이수학점 기준은 대학원 8학점 이상, 신학대학원 14학점이상, 상담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신학전문대학원 6학점 이상이며, F성적이 없어야 한다. ② 성적이의 신청기간 이후의 정정된 성적은 적용하지 않으며 동점자 발생 시 취득학점이 많은 순으로 균등 분할 지급한다.<시행일: 2013. 4. 17.>

**제4조 (선발)** 장학생의 선발 및 추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학업성적
2. 품행 및 협동정신
3. 경제사정
4. 신앙

**제5조 (장학금신청)** 본 대학교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 양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장학금 신청 기간 및 방법은 매 학기말 학생처에서 공고한다.

**제6조 (장학금확인)** 확정된 장학금은 홈페이지 학생지원서비스에서 개별 확인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5. 1. 1.>

## 제 3 장 장학금의 종류와 지급

**제7조 (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액)**

1. 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기준은 학부장학금[별표1], 대학원장학금[별표2]에 의하며, 장학금의 명칭, 지급기준, 금액 등은 장학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5.1.1.>
2. 교외장학금의 배정, 추천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3]에 의한다. <개정 2015.1.1.>
3. <삭제 2013. 4. 17.>
4. <삭제 2013. 4. 17.>
5. <삭제 2013. 4. 17.>
6. <삭제 2013. 4. 17.>
7. <삭제 2013. 4. 17.>

**제8조** (장학금의 재원) 본 대학교 장학금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대학재원
2. 외부로부터의 찬조금
3. 장학기금으로부터의 과실 수입

**제9조** (장학금의 지급 및 반환) 장학금은 아래의 원칙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6.1.20.>

1. 장학금은 당해 학기 등록금에서 차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외부장학금 등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시행일: 2013. 4. 17.>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등록금을 납부한 자에게는 현금(계좌)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단, 학자금 대출자는 학자금대출을 상환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2015. 1. 1.>
3.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수령하였음이 드러났을 시에는 지급한 장학금 전액을 회수한다.
4. 해당 학기에 장학금 수혜자 중 징계를 받은 자는 전액 취소한다.
5. 장학금을 수혜한 후 등록 이월한 자가 복학 시, 기 수혜한 장학금을 포기, 교체할 수 없다. <시행일: 2013. 4. 17.>
6. 신학대학원 신입생의 성적장학금은 각 과정(M.Div.I, M.Div.II)의 1등에게 입학금과 입학 학기의 등록금 전액을 지급한다.<개정 2015.1.1.>

**제10조** (제재)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이후 학기에 장학금 지급을 중지한다.

1. 장학금 반환대상자 중 장학금을 반환하지 않은 자
2. 기타 장학위원회에서 자격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

② 장학금 출연기관에서 특정한 조건을 정하였을 경우에는 전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6.01.20.]

## 부 칙

**제1조** (개정) 본 지침의 개정은 장학위원회에서 결의하여 교무위원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제2조** (발표) 본 개정지침은 1996년 9월 1일부터 효력을 가진다.

- 1972년 8월 개정<개정 2015. 1. 1.>
- 1983년 12월
- 1986년 12월
- 1988년 12월 15일 개정
- 1996년 9월 개정<개정 2015. 1. 1.>
- 1998년 4월 14일 개정<개정 2015. 1. 1.>
- 2000년 11월 10일 개정
- 2003년 6월 10일 개정
- 2003년 8월 1일 개정

2004년 2월 3일 개정

2004년 8월 3일 개정

## 부 칙

- ① 시행일 : 이 지침은 2006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7조 1항 성적우수장학금은 2007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① 이 지침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① 이 지침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① 이 지침은 2012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변경지침은 2013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1>~<별표3>의 개정 및 신설된 장학금은 2013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변경지침은 2013년 2학기 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변경지침은 2014년 1학기 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변경지침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 지침은 2016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지침은 2017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학부장학금 종류 및 지급기준 <신설 2013. 1. 25. ><개정 2015. 1. 1., 2016. 1. 20.>

장학금 명칭		지급기준		장학금 지급액
		수혜자격	기준성적	
장학금수혜 취득학점 : 성적장학금 15학점, 기타장학금 12학점 이상 / F학점이 없는 자				
신입생 장학금	STU 미래인재 장학금	입학 정책에 따라 해당 학년도에 제시된 내용으로 시행	A-(4.0)이상	일정액
	수시 장학금	입학 정책에 따라 해당 학년도에 제시된 내용으로 시행	B+(3.5)이상	일정액
	정시 장학금	입학 정책에 따라 해당 학년도에 제시된 내용으로 시행	B+(3.5)이상	일정액
성적우수 장학금 (학부)	선발인원	각 학과, 학년별 등록인원의 10%이내에서 선발하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함 평균평점이 높은 자를 우선함 취득학점이 많은 자를 우선함 환산총점이 높은 자를 우선함	B+(3.5)이상	각 학과 각 학년의 ① 1등: 등록금 전액 ② 2등: 등록금의 60% ③ 3등 : 등록금의 50% ④ 4등이하: 일정액
예술계열 전공별 실기 우수 장학금		교회음악과와 실용음악과 전공별 실기 우수자	별도로 정함	일정액
근로 장학금		학업 성적이 양호한 자로 등록금 조달 등을 위해 학교 및 학교 관련기관에서 업무를 돕는 자	별도로 정함	근로유형 A~D에 따라 시급으로 지급
서신가족장학금		① 본교 재직 중인 교직원 가족(본인, 배우자, 직계자녀) ② 교직원 가족이 재학 중 교직원이 정년퇴직, 공무수행 중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로 퇴직한 교직원의 경우 직계가족에게는 졸업시 까지 장학금 지급 ③ 자녀 이외에 동일인이 2회이상 진학하는 경우 1회만 지원.	2.2이상	① 자녀: 등록금전액 (입학금포함) ② 본인: 등록금전액 (입학금포함) ③ 배우자: 등록금의 50%(입학금포함)
임원 장학금		① 총학생회 정·부 및 학과 학생회장 ② 학교가 인정하는 학생 자치조직의 간부 (동아리 연합회, 총여학생회, 인출협 등) ③ 학보사 편집장, 방송국 국장	2.2이상	일정액
외국인학생 장학금		별도로 정함	2.6이상	별도로 정함
보훈		국가보훈기본법에 의한 보훈대상자 본인 및 직계손자녀 (북한이탈주민 교육보호대상자 포함)	백분위 70점 이상	① 대상자 본인 - 등록금 전액 (입학금포함) (학교 100%) ② 대상자 손자녀 - 등록금 전액 (입학금포함) (학교 50%, 국가 50%)
한가족 장학금		① 본교에 2인 이상의 부모 또는 2촌 이내의 형제가 재학할 경우 ② 2인이 동시에 학부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 (1명 미등록 휴학 시 불가) ③ ①.②에 속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2.2 이상	2인 재학시- 학부신입생 입학금 3인 재학시- 학부 수업료의 70% 지급
장애인 도우미 장학금		장애학생의 학습 활동 보조 및 학내 이동 등 학교 생활 적응을 도와주는 학생	백분위 70점 이상	일정액

장학금 명칭		지급기준		장학금 지급액
		수혜자격	기준성적	
복지 장학금	사랑장학금	가정이 곤란한 자 중 학비 및 생활비 보조를 요하는 자(장애인)	2.2 이상	일정액
	겨자씨장학금	①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수혜대상 소득분위에 해당하는 자 ②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선고지 감면 전후 소득분위가 변경된 자. ③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국가 2유형장학금을 선감면하였으나 예산 및 기타 사유로 지급이 보류된 자.		
	면학장학금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수혜대상 소득분위에 해당되지 않으나 당해학기 갑작스런 가계곤란으로 학비보조를 요하는 자		
	교역자자녀 장학금	본교 소속교단(기성) 개척교회 및 미자립 교회 교역자 자녀		
기타 장학금		① 학교의 발전에 공이 있거나 학교의 명예를 빛낸 자, ② 실습(연수)대상자 중 학교가 선발 한 자 ③기타 지급할 만한 사유가 있는 학생	별도로 정함	별도로 정함
특별장학금		장학제도 시행 시 별도로 정함	별도로 정함	일정액
포상장학금		학교 공모전 및 학과 특성화와 연계한 각종 경시대회 우승자	별도로 정함	일정액
stu 마일리지		학생들의 적극적 대학생활, 취업환경제고, 학업성취도 교양을 위해 학내외 다양한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포인트(마일리지)를 부여	2.2이상	일정액
STU 미래인재 장학금 (재학생)	국제교류학생 장학금	당해학기 등록을 필한 자 중 국제교류학생으로 허락을 받아 해당 대학에 등록을 필한 자	제한없음 (3조의 제한을 받지 않음)	등록금 50%
	교수추천장학금	각 학과 리더십이 투철한자 중 담임교수 추천자	2.2 이상	일정액
	군종장교 후보생 장학금	군종장교 후보생 최종 합격자	3.0이상	외부지원금을 포함하여 등록금 전액지원
	연수장학금	① 학과 및 전공과 연계된 프로그램에 선정 된 자 ② 학습역량 강화 연계 프로그램에 선정 된 자 ③ 리더십 트레이닝 프로그램에 선정 된 자 ④ 기타 총장이 정하는 프로그램에 선정 된 자	별도로 정함	일정액
	공로장학금	대학교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별도로 정함	일정액
	글로벌리더 장학금	대학 특성화 및 학생역량강화 정책에 따라 시행	별도로 정함	일정액
	자기주도학습 장학금	대학 특성화 및 학생역량강화 정책에 따라 시행	별도로 정함	일정액
	학습역량강화 지원장학금	대학 특성화 및 학생역량강화 정책에 따라 시행	별도로 정함	일정액
	진로설계장학금	대학 특성화 및 학생역량강화 정책에 따라 시행	별도로 정함	일정액

※ 1. 등록금은 수업료를 말함.(입학금 포함시 별도 표기 / 실습비, 학생회비 등 자율경비 비포함)

2. 기준성적은 직전학기 성적을 뜻함.